

붙임5 기타 안내 사항

《장애인 지원자 편의 지원 사항》

- 채용 지원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편의지원신청절차를 통해 채용 과정 중 편의지원 가능
- 일반전형(장애인), 사회형평적 인재(장애인) 제한전형 합격자에 한해 본인 요청 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가능(한국장애인고용공단)

[편의지원신청절차]

원서접수시 편의지원 제공 안내	○ 원서 접수 시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
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/ 증빙서류 제출	○ 원서 제출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란에 본인이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기재 및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종료일 전까지 제출
증빙서류 확인, 편의지원 제공 여부 게시	○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 필요여부 검토 후 유선 등을 통해 편의지원 제공 내용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

[편의지원 가능 장애유형, 증빙서류]

유형	신체적 장애 → 외부기관의 장애 → 지체, 뇌병변, 시각, 청각
증빙서류 (의사진단서)	<p>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 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</p> <p>※ 진단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: www.hira.or.kr 에서 확인가능)에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 유효</p>
편의지원예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- 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 - 전담도우미 - 면접시간 10분 이내 연장 - 기타

※ 장애의 중·경증여부는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기준을 적용